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11. 09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이 법률 제10827호(2011. 7. 14)호로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 시 위원장 직무 대행자를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자와 같이 하여 회의 운영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 시 직무 대행자를 “연장자”에서 “최다선 의원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”로 함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54조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연장자가”를 “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생략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<u>연장자가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생략	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<u>최다선위원이,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</u>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